

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1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2.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3년 11월 25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생명·재산·신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0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power11222@korea.kr

- 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혜승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.

발 의 자 : 이혜승, 이길호, 신경원
김귀근, 신금자, 이우천,
이훈미, 이동한, 박상현

1. 제안이유

-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「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·시행시 ‘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4조제1항제5호 ‘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’ 추가 신설

3. 관련법령

- 「노인복지법」

군포시 조례 제 호

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(생략) ② (생략)	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5.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